

의안번호	2216811
의 퇴 인	조정훈 의원
회 답 일	2026.04.14.
추계번호	26C0965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의2 (전담기관)	(제1항) 교육감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2항)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교육시설의 개방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2. 교육시설의 안전, 유지관리 및 시설 보수 등의 위탁 업무 3.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5. 그 밖에 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	
		(제3항)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35조 (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36조 (공단의 사업)	(제1항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교육시설의 개방·운영 지원,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</u> 16. <u>교육시설의 개방 및 폐교 관리 등 활용에 관한 업무</u> 17. <u>교육시설 안전·유지관리·보수 등 학교 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</u> 18. <u>시·도 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 전담기관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</u> 19. <u>교육시설 정책 기획·연구 및 정책 지원</u> 20. (현행 제16호와 같음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의2 (전담기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35조 (교육시설관리공단 의 설립) 안 제36조 (공단의 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교육감이 교육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②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)을 교육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)으로 개편하려는 것임
- 현재 교육시설 운영·관리 업무는 세부 분야별로 개별 학교 및 시·도 교육청 등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단일한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음
 - 구체적으로, 교육시설의 개방·활용, 안전 및 유지관리는 개별 학교, 폐교 관리는 시·도 교육청,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는 해당 시설 설치자의 소관 사무임

[표 1] 교육시설 운영·관리 업무의 관리·운영 주체

수행 기관	분야	법적 근거
개별학교	교육시설 개방 및 활용	「초·중등교육법」 §11
개별학교	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	「초·중등교육법」 §30의9
시·도교육청	폐교 관리 및 활용	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§4 등
학교복합시설 설치자	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	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」 §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한편, 안전원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, 교육시설 공제사업, 통합정보망 구축 등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¹⁾

1)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제35조(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)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제36조(안전원의 사업)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교육시설 공제사업
2.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3.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
4.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

[표 2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황

구분	내용
명칭	한국교육시설안전원
법인유형	비영리 특수법인(「민법」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)
의결기구	총회(198명), 이사회(11명),
조직체계	이사장 1명, 상임감사 1명, 2개 본부(경영관리본부, 사업관리본부)
주요사업	교육시설공제사업, 교육시설 재난 및 재해 예방,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,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, 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관리

자료: 교육부

- 개정안은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하여 교육시설 관리·운영 주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안전원을 교육시설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공단으로 개편하려는 것임

□ 개정안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 안전원을 개편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(안 제33조의2) 개정안은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,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시·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 - 아울러 개정안은 개별 학교 및 시·도교육청 등이 수행 중인 업무를 통합·이관하는 취지이므로, 이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분만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어려움

5. 교육시설 재난·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
 - 5의2.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
6.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
7. 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8. 교육시설 내진설계,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
9. 교육시설 실험·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
10.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
11.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
12.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 관련 업무
13.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·연수 및 홍보
14.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기술의 개발·보급
15.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16.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- (안 제35조 및 제36조) 개정안에 따라 안전원을 공단으로 개편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신규 사업에 수반되는 재정 투입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
 - 현재 안전원은 공제회비 등 자체 사업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 사무만을 수행하고 있음
 - 따라서 개편 이후 추가되는 교육시설 개방 및 폐교 관리, 전담기관 운영 지원 등 사무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를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움
- * [참고자료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수입·지출 예산 현황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수입·지출 예산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	2024		증감	
	금액	비율	금액	비율	금액	비율
◇ 총수입	510	100%	618	100%	-108	-17.5%
1. 사업수입	396	77.6%	482	78.0%	-86	-17.8%
공제사업	381	74.7%	358	57.9%	23	6.4%
수탁사업	15	2.9%	125	20.2%	-110	-88.0%
2. 이자수익	68	13.3%	63	10.2%	5	7.9%
3. 선급법인세 환입	10	2.0%	9	1.5%	1	11.1%
4. 재난예방운영준비금	36	7.1%	64	10.4%	-28	-43.8%
◇ 총지출	510	100%	618	100%	-108	-17.5%
1. 사업비	417	81.8%	510	82.5%	-93	-18.2%
공제사업	402	78.8%	380	61.5%	22	5.8%
수탁사업	15	2.9%	130	21.0%	-115	-88.5%
2. 일반관리비	67	13.1%	60	9.7%	7	11.7%
3. 비유동자산	7	1.4%	32	5.2%	-25	-78.1%
4. 선납법인세 등	9	1.8%	16	2.6%	-7	-43.8%

자료: 한국교육시설안전원